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 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SE♥UL M! SOUL

#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

2024. 9.

글로벌도시정책관

# 1

## 서울시-퀘벡주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

### □ 추진개요

- 추진대상 : 캐나다 퀘벡 주정부 (The Government of Quebec)

#### 퀘벡(Quebec)

- 명 칭 : 퀘벡 (Quebec)
- 인구/면적 : 약 8,485천명('20) / 1,542천km<sup>2</sup> (대한민국 약15배, 캐나다 전체 23%)
- 경제 : GDP 약 \$3,400억 (캐나다 전체 20%)
- 산업 : 항공우주, 인공지능, 생명과학, 환경기술, ICT 등 첨단 산업 발달
- 특이사항
  -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불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며 다양한 민족·문화 공존
  - 세계적 인공지능 연구기관 MILA연구소 위치(설립자 오슈아 벤지오는 딥러닝분야 최고권위자)
  -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99%에 이를만큼 친환경 분야에서 높은 입지

- 체결시기 : '24. 8. 22. (목)

- 체결방법 : 양 도시 대표(서울-행정1부시장, 퀘벡주-외교부장관) 대면하여  
서울시장 대리 서명

### □ 우호도시 협약 내용

- 혁신, 문화·관광, 보건,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교류·협력 활성화
- 양 도시 간 지식·정보공유, 국제회의 개최·전문인력 인적교류,  
관심분야 공동협력 등

붙임 : 양해각서 국문 1부

## □ 국문본(불문 번역)

서울특별시와 퀘벡 정부 간  
우호협력 체결을 위한 협약서

서울특별시와 퀘벡 정부(이하 "양 당사자"라 한다)는 국제 협력, 특히 양자 협력이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특별한 수단임을 인식하고, 교류의 큰 잠재력 및 양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협력의 가능성을 인식한다. 또한 경제발전, 혁신, 환경, 특히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, 그리고 문화, 보건,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, 경제, 사회,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전문지식 공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들의 참여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한다. 이에 양 당사자는 협업을 촉진하고 그 영속성을 보장하며 양 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나가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**제1조 목적**

본 협약의 목적은 양 당사자가 공통의 관심분야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. 협력의 틀 하에서 양 당사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은 물론 관련 기관과 단체, 특히 시민사회와 양 도시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.

**제2조 협력분야**

양 당사자는 다음의 공통 관심분야에 협력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합의한다. 단, 전략적 협력분야로 여길 수 있는 분야도 추후협의를 통해 협력분야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.

- 1) 혁신(인공지능 및 스마트시티 포함)
- 2) 문화
- 3) 상업(항공 및 멀티미디어 포함)
- 4) 관광
- 5) 교육 및 청년
- 6) 보건 및 사회복지
- 7)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

**제3조 협력방법**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협력방법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. 단, 이외의 방법도 추후협의를 통해 고려할 수 있다.

- 1)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, 문서, 전문지식, 선진사례의 공유
- 2) 서울시와 퀘벡에서 국제회의, 세미나, 컨퍼런스, 심포지움, 전시회, 박람회 등 개최
- 3)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고위급 정치인 및 행정가 회의 개최
- 4) 교육, 연구, 혁신 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인력의 교류
- 5) 공통의 관심분야에서 합동 이니셔티브 추진
- 6) 공통의 관심분야의 사업 진행을 위한 공모 개시
- 7) 이외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모든 방법

**제4조 협약이행**

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양 당사자는 합동실무그룹을 조직하여 상호협력을 조율한다. 합동실무그룹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화상회의의 방식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매년 한 번씩 만나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
※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(친선결연 등의 의결)

- 1) “魁-퀘벡주 격년제 협력 프로그램”하에 추진될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승인
- 2) 합의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양측의 자원을 결정
- 3) 추진중인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검토, 성과를 평가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정
- 4) 본 협약의 이행 및 해석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을 논의

#### 제5조 자문 및 조율

양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 소관 하에, 본 협약에 규정된 협력 및 교류 분야에 관심을 갖는 기관과의 자문 및 조율 체계를 조직할 수 있다.

#### 제6조 재정조항

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 사업 및 프로젝트의 이행은 양측의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조건부로 진행한다.

#### 제7조 협약확장

양 당사자는 추후협의를 통해 특정분야, 사업,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서, 의사록, 보고서, 또는 기타 공동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협력분야를 포함시키거나 기존 협력분야를 확대 또는 보완하기 위해 본 협약을 확장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분쟁해결

본 협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.

#### 제9조 수정

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. 수정된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#### 제10조 종결

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,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.

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게 희망하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해지 의사가 전달된 경우, 양 당사자는 본 협약 하에 진행된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의 종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본 협약서는 2024년 8월 22일에 퀘벡에서 서명되고, 한국어와 불어로 작성된 협약서는 모두 동등하게 정본임을 명시한다.

김 상 한

서울특별시 시장을 대신하여  
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상한



퀘벡 국제관계 및 프랑코포니 장관  
마르틴 비롱

## 2

# 서울시-리야드시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

### □ 추진개요

- 추진대상 :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(Riyadh Municipality)

#### 리야드시(Riyadh Municipality)

- 인구/면적 : 6,924천명('22년) / 1,550km<sup>2</sup>(서울시 면적의 약 2.5배)
- 행정 :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리야드 주의 주도, 16개의 지역으로 구성
- 역할 : 도시계획, 교통, 환경보호, 안전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
- 미션 :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촉진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,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리야드 발전 도모

- 체결시기 : 10월 중
- 체결방법 : 양 도시 시장 대면 및 직접 서명

### □ 우호도시 협약 내용

- 양 도시 우호도시 결연 선언, 문화·도시개발계획·스마트시티·인프라 등 분야별 실질적 교류·협력
- 양 도시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, 전공자 및 인력의 교류
- 양 도시가 주최하는 국제회의·행사 홍보 및 참여 협력

### □ 향후계획

- 서울-리야드 간 우호 결연 체결 : 10월 중 ※ 스마트라이프워크 기간 중

붙임 : 양해각서 국문(안) 1부

## □ 국문본(영문 번역)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리야드시 간  
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리야드시(이하 '양 도시')는 양국의 적용 가능 규정, 법 및 지시사항에 따라 도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경험 공유를 위해 양자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희망한바, 그 바램에 기반하여 본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양자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.

본 협약서의 조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상호 간의 약속으로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명시한 분권화된 권한을 변경시키지 못하며,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만을 추구한다.

양 도시는 아래와 같이 본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합의한다.

## 제 1 조

1-1 양 도시는 양 도시의 희망에 따라 활발한 인적 교류 및 기타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 평가 등 실질적인 교류를 협력하고 수행하기로 약속한다.

## 제 2 조

2-1 양 도시는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역량 한도 내에서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다:

- a. 문화 교류
- b. 도시개발 정책
- c. 스마트시티
- d. 지속가능한 도시계획
- e. 도시 거버넌스 및 행정 정책
- f. 도시 인프라 관리
- g. 공원 및 조경
- h. 자산 및 토지관리
- i.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관리
- j. 지방 행정 서비스
- k. 폐기물, 재활용 관리

## 제 3 조

양 도시는 다음을 통해 본 협약서를 이행한다.

- 3-1 양 도시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, 전공자 및 인력의 교류를 진행한다.
- 3-2 양 도시는 도시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상대 도시의 기관 및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의 홍보 및 개최에 참여한다.
- 3-3 양 도시가 작성한 문건, 연구 및 보고서와 양 도시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간행물을 교환한다.

#### 제 4 조

- 4-1 본 협약서는 각 도시의 추가적인 도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 본 협약서는 어느 도시 에게도 특수한 혹은 특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양 도시 간에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.
- 4-2 양 도시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본 협약서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각 도시의 가용 역량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.
- 4-3 양 도시는 상대의 사전 동의 없이 협력의 맥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세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.

#### 제 5 조

- 5-1 본 협약서의 해석 또는 적용을 포함하여 본 협약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, 양 도시는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의성실하게 그러한 분쟁을 해결한다.
- 5-2 본 협약서는 양 도시가 체결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 조약 또는 협약에서 발생하는 양 도시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.

#### 제 6 조

- 6-1 본 협약서는 서명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 일로부터 최초 3년간 효력을 발휘한다. 협약서의 유효성은 어느 도시도 서면 통지를 통해 효력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본 협약서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,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.
- 6-2 본 협약서는 효력 발생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양 도시 간에 교환된 마지막 서면 통지일로부터 발효된다.
- 6-3 본 협약서가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, 양 도시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그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, 활동 또는 의무와 관련한 협약서상의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.
- 6-4 본 협약서에 대한 수정은 양 도시의 합의 하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.

본 협약서는 아랍어, 영어, 한국어로 인쇄된 세 개의 원본과 그 사본으로 이루어진다.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, 영문본을 우선으로 한다.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
오세훈 시장

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리야드시  
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에야프